

집합교육의 내용(제2조제1항 관련)

과목 구분		내용	이수 시간
공통 과목	소양 교육	변리사법 제도, 직업의 이해,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등	10시간 이상
	산업재산권법 실무	국내법 제도 및 판례, 외국법 제도, 국제출원 제도 등	50시간 이상
	산업재산권 출원 실무	특허·상표·디자인 출원, 국제출원, 선행 기술 검색 등	120시간 이상
선택 과목	심판·소송 실무	심결취소소송, 침해소송, 국제 분쟁, 협상 및 계약 등	70시간 이상
	과학기술의 이해	자연과학 개론, 산업기술 동향 등	70시간 이상

비고

1. 실무수습 대상자는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.
2.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심판·소송 실무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3.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과목 중 과학기술의 이해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.
4.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.